

2008. 4.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②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③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④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4.15	2008.4.15	2008.4.21	2008.4.21	기획감사과장
②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	"	문화체육과장
③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	"	"	관광과장
④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2.26	2008.2.27	2008.3.4	"	곽호종의원
⑤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	"	심종섭의원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명예시민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행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2조)
-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기관·단체장·개인등의 추천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시장 최종결정
-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서와 기념품을 각각 수여하도록 함(안 제5조)
- 명예시민 선정자에 대한 예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6조)
- 명예시민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7조)

나.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설치근거를 명확히하고 복무, 신분보장, 연봉제 및 위탁 등 선수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 및 선수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단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장)
-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장)
- 단원의 직권면직이나 휴직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장)
-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장)

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공예품 판매촉진 및 전통민속공예의 계승·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건립한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전시판매장의 업무 및 기능(안 제4조)
 -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홍보
 - 전통민속공예 보존을 위한 문화교실 등 체험장 운영
 - 지역공예품의 국내시장 판촉 등
-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공무원, 공예 및 관광사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는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하기 위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재향군인으로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함(안 제2조)
-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전, 표창, 위문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공익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5조)

마.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민간자율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돋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꾸고자하는 새마을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원활한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

- 새마을운동조직이라함은 충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충주시협의회, 충주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충주시지부로 함(안 제2조)
-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현행조례와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명예시민 결정을 함에 있어 현행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명예시민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명시한 내용이 현행조례와 달라진 점이며 여타 사항은 현행 조례와 크게 다른 점이 없음.

-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조문형식이나 내용, 예산의 수급, 법령저촉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결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배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심의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 시의 간부로 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에서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한 명예시민증의 위상저하는 물론, 남발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하겠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명예시민으로 선정 되면 충주시민과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동의 내지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거나

의회동의가 시기와 능률면에서 적절치 않다면 이를 위해 지역원로,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현재 충주시청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배드민턴, 조정, 육상 등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치포함 25명의 선수로 구성

되어 지난해만도 3개 종목 모두 상위권 입상의 좋은 경기 성적을 내는 등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됨.

- 조례안은 총칙, 보수, 복무, 신분보장, 상벌, 위탁 등 6장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원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최소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음.

단원의 등급 산정은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성적을 반영토록 하였고

연간 6일의 연가와 90일간의 병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 또는 형의 선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단원의 휴직·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분보장과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현재의 보수체계는 코치의 경우 일반직 보수의 규정을 적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선수 등급 및 성적 등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 성적에 따른 보수차이가 많아지게 되므로 선수들에게 의욕을 고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의 시행은 2009년부터 적용하게 되며 운동부 종목 및 선수단은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게 됨.

-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 및 자구 등에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없으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직장경기부의 안정화는 물론, 선수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직장경기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조례안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으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제13조 제3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1조는 삭제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가금면 일대의 민속공예품 상권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본 조례안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 본 시설의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시설을 사용수익 하고자 할 단체는 있을 것인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향군인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되어있음.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된 사업은 법 제4조의2에
 - 재향군인회의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 위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회원의 회비, 사

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하고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조례안의 핵심인 제4조 예우에 대하여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차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로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조례안 제5조의 각호 중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제3호의 전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겠음.

덧붙여서 각호의 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적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본 조례안이 특별히 타 조례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므로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참고로, 충주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약 70여개 단체가 됨. 본 조례가 타 단체에 대한 영향력과 형평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조례안에서 제3조의 보조지원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운영비와 새마을 사업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봉사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현행 보조금 지원절차를 준용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됨.
- 충주시새마을회 등 지원대상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충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겠으나

곽호종 의원께서 발의한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집행부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와 같이 타 단체에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지원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4. 질의 · 답변 요지

가. 충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질의 : 100회 임시회 때 외국인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명예시민을 선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가 부결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 답변 :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라는 뜻임
- ▶ 질의 : 명예시민증을 전출시기에 맞춰 수여할 이유가 있나?
- 답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 ▶ 질의 : 선정시기 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 답변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나.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질의 :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년간 예산은?
- 답변 : 3개팀을 운영하는데 16억 28천 3백만원 정도 소요됨.
- ▶ 질의 : 조례의 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 답변 : 현재는 성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짐.
- ▶ 질의 : 연봉 수준은?
- 답변 : 타 시군의 평균정도라고 보시면 됨.
- ▶ 질의 : 종목간 보수는 차이가 없는가?
- 답변 : 전국의 실업팀 수 등에 따라서 보수에 차등을 둘 계획임.

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 ▶ 질의 : 시설을 위탁운영할 계획인가?
- 답변 : 위탁운영할 계획임.
- ▶ 질의 : 운영비는 자체 조달이 가능한가?
- 답변 : 자체 조달이 원칙이나 시설에 대한 초기에는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년정도 운영상황을 살펴 가면서 지원 할 계획임.
- ▶ 질의 : 개인에게도 위탁운영이 가능한가?
- 답변 :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음.
- ▶ 질의 : 적자운영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 이 지역이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임.
- ▶ 질의 :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변을 관광단지화 할 계획은 없는가?
- 답변 :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라.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질의 : 없음

마.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 | | |
|--|--------|
| 가. 충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나.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 원안가결 |
| 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수정사유》
- 제6조 제1항 :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 함
- 제11조 : 상위법 위배 | : 수정가결 |
| 라.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원안가결 |
| 마.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원안가결 |

6. 별 임

- 가. 충주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나.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 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및 수정안 1부.
- 라. 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마.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기관에”로 한다.

안 제11조의 조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감면 및 면제”로 하 고 본문 중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탁운영)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을 법인·단체 또는 <u>기관이나 개인에게</u>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6조(위탁운영)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을 법인·단체 또는 <u>기관</u> 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④ (제정안과 같음)
제11조(<u>사용료 감면</u>)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u>사용료 감면 및 면제</u>)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